对此对当五时是相称受到到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경 상 북 도 의 회 (이철식 의원 외 26명)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이철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516 번 호

발의연월일: 2024. 2. 16.

발 의 자: 이철식·박창욱·남영숙

노성환·최덕규·신효광 황재철·정근수·서석영 이충원·김대진·강만수 김용현·황두영·윤종호 박선하·손희권·정경민 김창혁·김진엽·박성만 박영서·이선희·박용선 이추우·이형식·최병준

의원(27명)

1. 제안이유

-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경상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O 이에 공모사업의 적법·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라. 공모신청 전 경상북도의회에 사전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 선정 기 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5. 관련부서 협의

- 가.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
 - 예산입법담당관(예산입법담당관-138, '24. 2. 1.)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유발요인 없음
 - 감사관(정책기획관-2002, '24. 2. 16.)
- 다. 규제심사 결과: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혁신담당관(정책기획관-2002, '24. 2. 16.)
- 라. 해당부서 의견: 검토완료
 - 예산담당관(정책기획관-2002, '24. 2. 16.)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6. 발의의원 서명부: 붙임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국가 등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양질의 공모사업 유치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 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모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

립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 2. 공모사업의 타당성
 - 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 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
 - 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
 - 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
 - 4. 재정협의
 - 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의 재원 비율

- 다. 도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워부담 여부 및 방안
- 5. 공모사업의 효과성
 -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 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그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지급할 수 있다.
 - 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 제8조(의회 보고)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경상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 1. 경상북도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 2.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

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 · 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 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예산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3억워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상기 제정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법·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지원이 필요·가능한 대 상 및 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없으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

4. 작성자

· 예산담당관실 지방행정주사보 김상민 (054-880-2169)

2025 APEC 청상회의 경주유치! 한국을 넘어 세계로!













수신 정책기획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 제출

- 1. 정책기획관-1724(2024.2.8.)호와 관련입니다.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붙임과 같이 회신 합니다.

불임 검토의견 및 비용추계 미청부 사유서 1부. 끝.

에 산 담 5분활각

주무한 강사에 국비에산점장 CHIZ 에반당당한 전쟁 2024 2 15

협조자 주무관 권오순

시행 예산답당관-2266 (2024 2.15.) 접수 전체기획관-1973 (2024 2.15.)

우 36759 경상복도 안동시 중천면 도청대로 455, 경복도원 1층 예산당당관실 / http://www.sph.go.kr

전화번호 054-880-2169 텍스번호 054-880 / KSM07889@korum.kr / 대국인 공개

"2025 APEC 청상회의" 경주가 최착지입니다.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0) 210	del	
St SAG	parle	
的好会	公司分	
2 Ktan		
刘码和	8/200	
All in Vo	Ning	
Eb 2/2	A STATE OF THE STA	
杨红	Mors	
M M O	1	
이충원		
김 대전	- Jourse	
沙地方	11 12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원명	서명	비고
温多短	The	
36 7 on	200	
EN BU		
11 大山 第一	M	
至当对	DA/h	
H My	BAMAN	
김창호	The same of the sa	
김지의	> fright	
My My	2 kg	
DT 07/1	W (W)	
可对		
H&M	9/	

발의의원 서명부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 원 명	서명	비고
0) 314	Mo	
司智科	AS 33	
和独生	Mhh	

※ 서명: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서명 시 정자로 기입)